

제 호

## 건설기계 사용·운행중지명령서

건 설 기 계 등 록 번 호

명 령 사 유

사 용 · 운 행 중 지 기 간

정기검사·수시검사·정비 명령을 받고 검사에서 적합 또는 시정권고 판정을 받을 때까지

위의 건설기계에 대하여 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13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의  
에 따라 사용·운행 중지를 명합니다.

년 월 일

시·도지사 직인

주 : 이 명령서를 받은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13조제5항부터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명령, 수시  
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을 위한 임시운행 외에는 건설기계를 사용·운행할 수 없습니다.